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글 편집실



Q

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1월 27일 이후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노동자 수에 아르바이트생과 배달 기사도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도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트·미용실·식당·제과점·카페 등 요식 및 서비스업, 숙박업, 도소매업, 일반 회사를 비롯한 소규모 영세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상시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기업 전체이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예로 같은 사업주가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 3명씩을 고용했어도 총 6명의 고용인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상시노동자에 포함되며 배달 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경우만 포함됩니다.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노동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네 미용실·식당·제과점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상시노동자 수가 5~50인 미만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임업 등 5개 특정 업종 중 상시노동자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적용 사업장	업무 담당 구분	선임 대상(자격)	주요 업무
5인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부서장, 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 (해당 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 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20~49인 사업장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 이상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이수 (겸임가능)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위험도 및 대응					
근로환경은 얼마나 위험한가?					
사망사고 위험요인은 개선·관리하는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구체적인 안전방침·목표가 있는가?					
안전보건 조직·관리자가 있는가?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이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노·사가 함께 실시하는가?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노동자의 의견 제시가 자유로운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는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가?					
비상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훈련을 실시하는가?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및 실행하고 있는가?					
반기 1회 이상 전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하고 있는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54P <독자의 소리>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

